

고령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341-11번지 일원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「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22일

고령군수

1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
- 또한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

2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공공·문화체육시설

1) 체육시설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1	체육시설	실내 체육관	대가야읍 쾌빈리 341-11번지 일원	-	증) 9,950	9,950	-	

■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 내용	결정 사유
1	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체육시설 신설 - 9,950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들이 계절 및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휴식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■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맞춤형시설 조성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

3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: 게재 생략
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4. 관련도서는 고령군청 도시건축과(☎ 054-950-6706), 여성청소년과(☎ 054-950-63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